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6호)

2024.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2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구자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음.

2023년 12월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의 주민통계 기준 인구수는 약 42만명이나 되나,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 및 [별표 7]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별표 1]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즉, 현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구역(구미시 및 김천시)에서 구미시를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설치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폐지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관할구역 규정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폐지

○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과 신설되는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5년 3월 1일로 규정됨.

<폐지·신설되는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폐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2025년 3월 1일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나.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¹⁾

1) 관할인구

- 개정안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관내에 구미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구역(김천시 및 구미시)에서 구미시를 제외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변경된 관할구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및 구미지원의 관할인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음.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관할인구는 40만 5,506명으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인구(54만 3,021명)의 약 74.7%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인구(명)
현재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2,853.4	1,916,333
	김천지원	김천시·구미시	1,625.3	543,021
변경 후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	2,853.4	1,916,333
	김천지원	김천시	1,009.9	137,515(25.3%)
	구미지원	구미시	615.4	405,506(74.7%)

-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관할인구(40만 5,506명)는 전국 지원 중 22위 규모로, 전국 지원 평균(52만 1,835명)보다는 작지만,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37만 4,672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1)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지원별 관할인구 비교>

(2023. 12. 31. 기준)

순위	지원	인구	순위	지원	인구
1	성남지원	1,640,985	24	홍성지원	320,766
2	고양지원	1,572,660	25	충주지원	298,961
3	안산지원	1,429,220	26	안동지원	282,737
4	부천지원	1,266,140	27	경주지원	247,489
5	안양지원	1,045,759	28	상주지원	218,136
6	대구서부지원	1,026,178	29	논산지원	217,938
7	부산서부지원	1,020,844	30	정읍지원	204,557
8	천안지원	1,001,755	31	밀양지원	159,167
9	부산동부지원	987,880	32	제천지원	157,895
10	남양주지원	981,660	33	영월지원	150,895
11	순천지원	825,612	34	해남지원	140,195
12	평택지원	780,056	35	거창지원	138,195
13	진주지원	566,242	36	김천지원(분리 후)	137,515
14	김천지원(현재)	543,021	36	속초지원	137,069
15	군산지원	530,016	37	공주지원	132,272
16	포항지원	502,110	38	남원지원	124,528
17	여주지원	461,748	39	의성지원	97,093
18	마산지원	444,890	40	영덕지원	96,385
19	목포지원	425,440	41	영동지원	93,086
20	원주지원	407,862	42	장흥지원	67,768
21	서산지원	407,097	전국 지원 평균		521,835
22	구미지원	405,506	수도권 소재 지원 평균		1,147,279
22	통영지원	404,057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374,672
23	강릉지원	360,715			

2) 예상 사건 수

-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구미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사건은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에서 처리될 것임. 인구비율(신설 구미지원 관할인구는 기존 김천지원 관할인구의 74.7%)에 따라 사건 수를 추정해 보면, 구미지원 사건 수는 약 2,660건으로 예상됨.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 사건 수 추정>

구 분	민사		형사		합계
	합의	단독	합의	단독	
김천지원	91	1,351	128	1,990	3,560
김천지원 (분리 후)	23	342	32	503	900
구미지원(안)	68	1,009	96	1,487	2,660

-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연간 사건 수(2,660건)는 전국 지원 중 24위 규모로, 현재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사건 수(2,893건) 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별 사건 수 비교>

(2023. 12. 31.기준)

순위	지원	사건수
1	성남지원	12,653
2	안산지원	11,020
3	고양지원	10,828
4	부천지원	10,797
5	부산지법동부지원	8,357
6	천안지원	7,958
7	안양지원	7,318
8	부산지법서부지원	7,316
9	평택지원	7,268
10	남양주지원	7,19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7,169
12	순천지원	5,882
13	진주지원	4,806
14	군산지원	4,273
15	여주지원	4,083
16	목포지원	3,765
17	원주지원	3,630
18	통영지원	3,611
19	김천지원(현재)	3,560
20	서산지원	3,491
21	포항지원	3,480
22	마산지원	3,237
23	충주지원	2,745
24	구미지원	2,660

순위	지원	사건수
24	강릉지원	2,649
25	홍성지원	2,644
26	경주지원	1,952
27	안동지원	1,778
28	논산지원	1,508
29	정읍지원	1,441
30	밀양지원	1,405
31	상주지원	1,362
32	해남지원	1,331
33	속초지원	1,254
34	공주지원	1,189
35	영월지원	1,103
36	거창지원	1,046
37	제천지원	913
38	김천지원(분리 후)	900
38	영덕지원	834
39	남원지원	784
40	의성지원	693
41	영동지원	617
42	장흥지원	567
전국 지원 평균		4,036
수도권 소재 지원 평균		8,895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2,893

3) 사법 접근성

- 현재 구미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1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담당함. 구미시청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까지의 거리는 34km, 소요시간은 자동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5분 정도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구미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은 크게 나쁘지는 않음.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의 사법 접근성 비교>

구분	인구(명)	관할법원	각 시청 ↔ 관할법원		
			거리(km) ²⁾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구미시	405,506	김천지원	34	30분	1시간5분
양산시	355,122	울산지법	42	39분	1시간43분
아산시	345,796	천안지원	17	24분	1시간6분
김포시	486,172	부천지원	20	46분	1시간10분
파주시	497,753	고양지원	23	30분	1시간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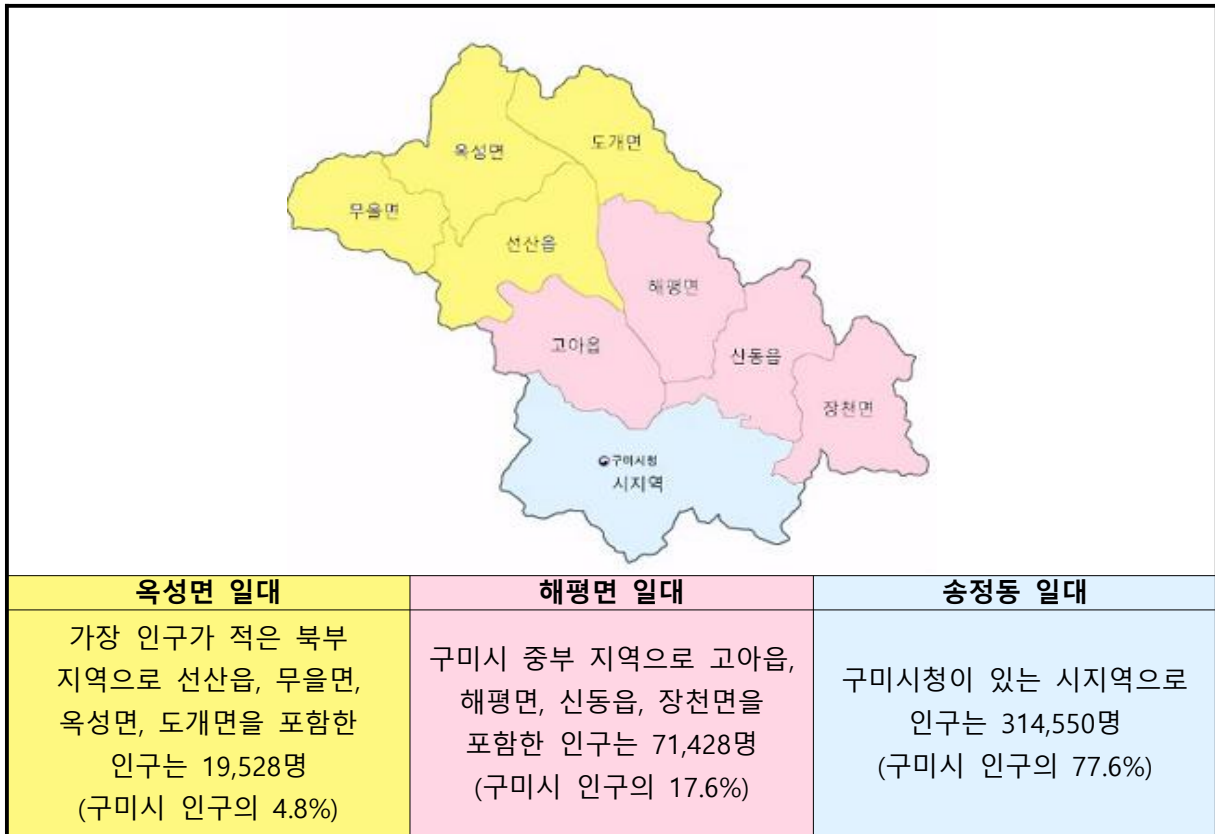
- 구미지원이 구미시청 인근 부지에 설치된다고 전제하면, 구미지원 설치에 따른 구미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옥성면과 해평면의 경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천지원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데 각각 37분과 47분이 소요되나, 구미지원이 설치되면 각각 32분과 21분으로 단축됨. 또한, 구미시 관할인구의 약 77.6%가 거주하고 있는 송정동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천지원

2) 네이버맵 길찾기에 따른 최적 경로로 검색한 결과임

까지는 자동차로 30분이 소요되나, 구미지원이 설치되면 3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미시 각 거점지역에서의 사법 접근성 비교>



출발지	인구	각 행정복지센터↔김천지원			각 행정복지센터↔구미시청		
		거리 (km)	시간		거리 (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옥성면	19,528명 (4.8%)	40	37분	1시간59분	30	32분	1시간49분
해평면	71,428명 (17.6%)	40	47분	2시간2분	15	21분	51분
송정동	314,550명 (77.6%)	35	30분	1시간19분	1.2	3분	7분

다. 검토의견

- 경상북도 구미시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임. 구미시에 구미시법원이 있으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제1심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관내에 구미지원을 신설하여 구미시법원을 구미지원으로 승격하는 한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관할구역(김천시 및 구미시)에서 구미시를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재 대구지방법원 관내에는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등 8개 지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구미지원이 설치되면 총 9개가 됨.
-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설치는 ① 구미지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구미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김천지원의 관할인구나 사건 수에 미치는 영향, ④ 지원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⑤ 법원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설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의 관할인구(40만 5,506건)는 지방권

소재 지원의 평균 관할인구(37만 4,672명)에 비해 다소 높고, 예상 사건 수(2,660건)는 지방권 소재 지원 평균 사건 수(2,893건)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한 편이라고 보이며, 구미지원이 설치되면 구미시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구미시의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까지의 사법 접근성도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며, 김천지원 관할인구의 약 74.7%를 차지하는 구미시가 김천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김천지원의 관할인구는 전국 지원 중 14위에서 36위로, 사건 수는 19위에서 28위로 낮아지게 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구미시법원을 폐지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만을 설치하고, 대구가정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데, 이 경우 구미시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던 협의이혼사건 등의 관할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으로 변경되어 구미시 지역 주민들의 협의이혼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으며, 구미시의 일반사건과 가사사건 1심의 관할법원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총 160억 4,500만원(연평균 32억 9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구미지원의 청사는 현 구미시법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구미지원에는 판사 증원 없이 소속 공무원만 경주지원 규모로 46명 증원(경주지원 소속 공무원 정원 53명, 구미시법원 공무원 7명을 제외한 나머지만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참조).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따라 구미지원이 신설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1심 사건에 대한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관할 법원인 김천지원까지의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미시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용인시, 김해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구미시의 일반사건과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이 상이하게 되므로, 관내 타 지원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의 개정을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론적으로, 구미지원의 설치 여부는 지원 설치의 효용성, 지원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 정도,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간 관할의 합리적 배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을 폐지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8억 5,200만원, 2029년 28억 3,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0억 4,500만원(연평균 32억 9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 설치 (안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7])	2,852	3,755	3,815	2,784	2,839	16,045	3,209

- 주: 1. 대구지방법원 소속 구미지원 설치(안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7])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유사사례인 경주지원을 참고하여 총 46명의 공무원이 증원되고 구미시법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구미지원에 총 46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과 자산취득비, 구미시법원 증축비용과 증축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
3.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5년의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는 10개월분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미지원은 관할 자치단체 수가 1개로 같은 대구지방법원 소속 경주지원(이하 “경주지원”이라 함)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른 구미지원 소속 공무원은 경주지원 소속 공무원 규모로 운용하되, 기존 구미시법원 인력(7명)을 제외한 인원을 증원
- 구미지원의 청사는 현 구미시법원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되, 2025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증축기간에는 구미시법원 청사 사용을 중지하고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